

군민안전보험 적용 범위

뺑소니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 *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강도에 의한 사고라 함은?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

의사사고라 함은?

- *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이라 함은?

- * 피보험자가 공제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이라 함은?

- *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당보상금을 지급

군민안전보험 적용 범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라 함은?

- * 만 12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

미아찾기 지원금이라 함은?

- * 만 8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지급

의사상자상해 보상금이란?

-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신체·생명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지급

농기계사고란?

-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문 / 의 / 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02)6900-2200



·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장치 ·

거창군민 안전보험 안내

모든 군민이 가입되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거창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를 말합니다.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제5조의2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금액?

*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에 따라 최대 1500만원

적용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내·외국인 모두 포함)

적용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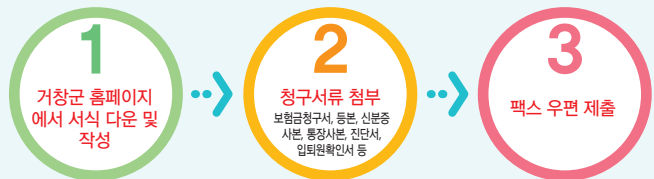
*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함(국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

적용기간?

* 2019. 1. 22. ~ 2020. 1. 21.

보험금 청구

- 청구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구비서류 :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거창군 홈페이지
 (1)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초)본 등
 (2) 기타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02-6900-2200)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구분	보장금액	비고
자연재해 상해사망	1200만원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2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
강도 상해사망	12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원한도	”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일당	1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한도	”
미아찾기 지원금	100만원한도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1000만원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5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

※ 사망사고의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군민안전보험 적용 범위

자연재해라함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
-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라 함은?

-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 건물 및 건축 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라 함은?

-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 * 여객수송용 항공기
 -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 여객 수송용 선박